

브로커 변호사의 부패실태

손 광 운(변호사, 개혁변호사모임)

I. 이순호 변호사 사건의 전말

1. 이순호 사건의 수사발표와 판결

대한민국의 법조를 6개월이상 뒤흔들어 놓았던 '이순호변호사'에 대한 판결이 마침내 98.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형사합의1부)에서 선고되었다.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97. 10. 24. 의정부지청이 "변호사 수임사건 관련 알선료 수수 비리사건 종합수사 결과"라는 긴 제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지 8개월만에 비로소 1차 결론이 난셈이다. 때 의정부지청은 법조브로커를 사무장으로 고용, 알선료를 주고 17억대의 사건을 수임한 이순호 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남양주 경찰서의 경찰관, 변호사 사무장, 법원·검찰 직원 16명으로 연결된 이른바 「남양주 커넥션」을 적발했다.

당시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인 이순호 변호사는 검찰에 소환되기 전 일본으로 달아났으며 이외의 15명은 모두 구속됐다. 그 뒤 이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채 해외에 머물다가 98. 2월초 귀국하여 구속되어 기대했던 보석신청도 기각된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것이다. 당시 검찰이 발표한 이순호 변호사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이변호사는 95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재직중 개업, 남양주경찰서 출신 최종업(39)씨와 의정부 법원 계장출신 최용주(45)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수임료의 20~30%를 경찰과 법원직원 등에게 알선료로 지급하고 사건을 맡았다." "이변호사가 두 사무장에게 각각 경찰, 법조를 맡게한 후 남양주경찰서 형사사건의 70%를 독점적으로 처리, 개업이후 약 17억원 이상을 수임했다. 실제 밝혀지지 않은 수임료를 합치면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남양주 커넥션」 사건 초기에 구속된 인물은 변호사 사무장, 법무사, 검찰·법원직원, 경찰관등 총 19명에 이른다.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등 8명을 포함하면 27명이 적발된 것이다. 또 의정부시에서 개업중인 A변호사 사무장 한영남(50)씨, B변호사의 사무장 김두성(36)씨와 남양주서 최재선(31)순경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A,B변호사는 수사 결과 혐의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처리는 사법처리 권한이 없는 혐의의 수준의 대한변협에서 떠맡게 됐다. 그 뒤 이순호 변호사 사건은 법조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한 변호사가 알려진 금액으로도 1년여동안 17억대의 사건을 브로커를 고용해 수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여론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같은 여론의 움직임은 검찰과 언론으로 하여금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져오던 법조계의 종합적인 비리를 파헤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청의 담당 검사도 놀라는 눈치였다. 이 사건이 설마 이정도의 거대한 파장을 불러와 전국적인 영향을 불러 일으키리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2. 당시 남양주 경찰서 상황

이번 법조비리 파동으로 남양주경찰서에서 구속된 경찰관은 모두 8명, 검찰은 "비리가 확인된 경찰도 적지 않으나 너무 많이 구속되면 경찰서 업무가 마비된다."며 선별했다는 후문이다. 사건 발표 하루 전날인 97년 10월 23일 남양주서 교통사고 처리반의 직원 한명이 자수하려고 검찰청에 출두했다. 그런데 이미 수사를 마무리짓고 구속자 발표 자료를 만든 검찰은 그에게 다음주초에 다시 출두하라고 둘러보내는 실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사자한테는 행운이 아닐수 없다. 발표 며칠전에 자수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구속자 명단에 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겪은 일화 한토막을 소개한다.

수사발표때 모 방송국 기자가 급히 취재차 경찰서에 갔다가 온 뒤 해준 얘기이다.

"경찰서에 60여명의 경찰관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경찰서장도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참 의한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과거 세무공무원을 수사하면 해당 세무서가 빙사무소가된다는 보도는 여러번 보았지만 경찰서의 경찰관이 자리를 떠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근래 보기드문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3. 과거 수사의 내력

93년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정작업의 차원에서 인천과 서울에서 변호사 2~3명이 구속된 적이 있다. 이때 인천에서는 이변호사처럼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던 법원출신의 변호사가 구속되었고 서울에서는 교통사고나 산재환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사건을 역시 브로커를 통해 유치해 고액의 승소사례금을 챙기는 이른바 '앰뷸런스 변호사' 2명정도가 처벌을 받았다. 이것이 전부였다. 그때는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전체에 큰 파장도 없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잠시 움츠리다가 "언제 그랬느냐"는식으로 일찌감치 잊혀진 사건이 되어버렸다. 어찌되었던 그때 처음으로 검찰이 브로커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70년초 서울의 법관이 재판 때문에 제주도에 출장갔다가 변호사한테 음식대접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 이것을 흔히 법조계에서는 「사법파동」이라고 하지만 변호사의 사건선임에 따른 수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이뤄진 사건쯤으로 보면 정확할 것 같다.

93년수사때 의정부의 분위기도 한순간 긴장이 훌렸다.

'정부의 사정차원에서 이뤄진것이니까 말 많은 의정부나 수원등 다른곳에도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투였다. 그러나 인천동지에서 불었던 수사의 강풍은 의정부까지 불어오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4. 그간 내가 겪은 검찰의 태도

이미 5년전쯤 이책의 뒤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의정부 소장변호사들이 브로커 변호사들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검찰에다 냈을때는 미동도 하지않던 검찰이 갑자기 이렇게 수사를 한것은 아직도 믿겨지지 않은 대목이다.

나의 기억으로는 매년 검찰인사때마다 지청장과 검사들이 바뀌면 초기에는 의욕을 보이는 것 같다가 구령이 담넘어 기듯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XXX 검사입니다. 시간있으면 잠깐 다녀 가십시오."

"이번에 큰맘먹고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있으면 좀 주십시오."

"아니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이런 브로커변호사 척결은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권을 벌등해 수사하면 결과가 쉽게 나올텐데요"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면 검찰쪽에서는 자료를 요구한 사실 조차 잊는 듯 했다.

매년 바뀐 검사들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변호사에게 자료가 어디 있었겠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은 당시 그저 시늉만하고만 것 밖에는 없다. 그래서 새로 온 검사가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적어도 변호사 수사에 관한한 나는 극도의 불신을 갖게 됐었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불신은 이번 검찰의 수사발표직전까지 계속 되었다. 그때 검찰의 수사결과에 가장 놀랐던 사람은 당사자인 이순호변호사 다음으로 내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한 번은 이순호 변호사 수사를 시작하기 몇 달전 전임 지청장과 의정부변호사 모임 회장단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비록 모임의 회장단은 아니었지만 변호사 비리에 관한한 투쟁(?)경력이 제일 많은 것이 참작이 되어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의해적인 인사가 오고간 뒤 기다렸다는 듯이 내 전공을 발휘했다.

"우리 변호사업계의 질서가 엉망입니다. 국민들이 변호사 불신하면 법원 검찰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청장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왕에 변호사비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수사를 해보시는것도 고려해 보시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지청장은 그같은 의견에 고개만 끄떡여 동감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순호 변호사 사건이 터지고 난후 한참뒤에 전임 지청장이 이변호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후 97년 9월 검찰 정기인사때 의정부지청장과 차장검사가 새로 바뀌고 평검사들도 많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놀라운 일은 인사가 있은지 불과 한달만에 의정부법조 역사이래 처음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이었다. 그같은 수사진행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자못 궁금했다. '변죽 만 올리다가 끝날수도 있고 적당히 이순호 변호사와 나를 포함한 사무장이나 경찰관들만 구속되는 선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5. 수사를 불러 일으킨 구리도박사건

수사검사인 노관규 검사가 어떤 경위로 이 수사를 개시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실무에서는 검사는 판사와 달리 검사통일체의 원칙에 따라 명령과 지시가 엄격하게 이뤄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일단 노검사가 상급자인 차장검사나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결재를 받아내기 위해 협의를 찾아야 하는것이 수사의

기본원칙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수사의 열쇠를 주임검사였던 노검사가 갖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검사가 어떤 동기에서 부담있는 수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는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구리도박'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은 이렇다.

의정부지청은 97년 7월 구리시 등 경기북부 일대에서 대규모로 도박판을 벌여온 전문 도박단을 적발했다. 중수부에 파견돼 한보그룹 김현철 사건을 다루고 같은해 6월에 의정부로 복귀한 노관규(39)검사가 수사를 지휘한 검사였다. 이 사건으로 한판에 수백만원씩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11명이 구속됐다. 그렇지만 이들은 구치소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다. 변호사 선임을 한 9명은 한달 뒤구속처부심이나 보석으로 모두 풀려났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단 2명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들 2명은 이미 석방된 사람들보다 죄질이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구속된 11명중 7명으로부터 선임계를 받은 이가 바로 이순호 변호사였다. 이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남양주경찰서의 형사2반 반장 봉재희 경사로부터 알선료를 주고 선임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4명은 구속적부심으로, 3명은 보석으로 풀려나도록 해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러니 검찰은 「협의가 더 무거운 피의자는 풀려나고 송사리만 남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변호사와 법관이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을 검찰로부터 받게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 변호사로서는 수임료를 더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한셈이었다. 사실 이 도박사건은 변호사들 사이에 지나치다는 얘기가 많이 들었다. 도박의 규모나 전과 등에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다른 변호사들이 선임했더라면 적부심이나 보석이 과연 되었을까. 놀랄정도로 사안이 비교적 무거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풀려나지 않은 2명의 남은 피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검찰이나 변호사들에 따르면 오히려 이 두사람이 나왔어도 먼저 나와야 되었는데 돈이 없는 죄로 교도소에서 계속 남아야 되는게 공평해보이지 않았던 것. 당사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를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한 할죄가 가볍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죄로 포기하여 보석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자체를 하지 않은채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은 모습을 볼 때다. 이런 모습은 알게 모르게 석방되지 않은 피고인이나 가족들에게는 법관과 변호사를 대하는 인식이 왜곡되거나 편견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내가 겪은 사건이다. 15세의 소년들 7~8명이 집단으로 또래 몇 명을 때려 구속되었다. 그중 2명만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소년형사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보석신청과 똑같은 '위탁변경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미뤄진채 재판을 받고 모두 석방이 되었다. 그때 나로서는 충분히 위탁변경신청을 받아주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해온 터였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재판하는 날 풀렸다. 변호사 선임할 능력도 없어 위탁변경신청을 하지않은 나머지 5명의 소년들을 직권으로 재판전에 석방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차선으로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석방시키겠다는 판사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를 선임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었을지 모르나, 형평을 맞추려는 판사의 태도에 기분이 좋았다. 이때도 그 변호사를 선임한 2명의 소년만 미리 석방되었다면 나머지 소년들이나 그들의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구리도박사건에서 미쳐 풀려나지 못했던 이들의 생각과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6. 내 사

구리도박 사건을 계기로 노검사는 검찰수사진과 정보망을 동원해 경기북부일대의 경찰서별 수임 현황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주로 브로커를 동원해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와 갓 개업하여 활동하는 변호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97. 5. 10.부터 6. 30.까지 기간을 잡아 의정부지청에 올라온 형사사건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미 종결되거나 진행 중인 수사기록 등을 일일히 들춰보면서 해야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각 경찰서별로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변호사 선임계를 일일이 확인하여 1위부터 10위까지의 명단을 기록한 도표를 만들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이순호 변호사가 조사기간동안 단연 1 등을 차지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변호사가 남양주경찰서 사건의 70%이상을 썩쓸이 한점에 주목했다. 이변호사는 50일동안 33건을 한것이니까 3일에 2건씩을 수임한 셈이다.

의정부에서 보통 한달에 많아야 2~3건의 형사사건을 선임하는 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변호사가 사건수임하는데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자신이 재직하던 법원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아 형사사건을 독식할수 있었다'며 '변호사 선임계가 불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훗날 검찰은 이변호사의 체포영장에 아예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현황과 관련한 도표를 명시해 이 변호사의 과다 수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7. 경찰관도 제보

수사가 진행될 무렵 남양주경찰서 내부에서도 제보가 들어왔다..

사무장이 유치장에까지 들어와 사건을 수임하는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사건을 소개하고 받는 알선료를 독식한다고 불만을 가진 동료 경찰관이 동료의 비리사실을 검찰에 몰래 신고하였다. 돈 앞에서는 동료애나 의리도 없는게 소개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브로커사회의 철칙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 4 인 방

검찰의 사건순위표에 올라간 상위권 변호사들은 이변호사를 포함해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의 내력을 설명하는게 순서일 듯 싶다.

의정부지청과 법원이 관할하는 경기북부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과 남양주시, 구리시, 미금시등 서울경계 임진강 일대의 파주, 포천, 연천등과 강원도 철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인구도 5-6년전에 100만명을 넘었으니까. 현재는 200여만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곳에서 취급하는 사건의 수를 보면 청주나 대전을 능가한다. 서울의 남부지원이나 지청과 거의 맞먹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갖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지역이 넓다 보니 자연히 검찰이나 언론에서 벗어나 있었고, 곳곳에서 불법과 탈법이 판친다는 비판이 일찍부터 일고 있었다. 그러나 88년경에만 해도 의정부 법원앞에 개업한 변호사는 모두 9명에 불과했다. 94년에는 30여명이 되다가 98년 현재 60여명으로 늘었다. 94년에 비해 2배이다. 박정희 대통령때 경제성장속도와 꼭 비슷하다. 이렇게 숫자가 늘다보니까 형사사건을 둘러싼 유치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의리도 없고 친구도 없다. 겉으로는 웃지만 언제나 경쟁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건을 잘 가져오는 유능한 사무장은 언제든지 다른 사무실에서 좋은 조건으로 채용해 갈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맘을 놓을수 없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었다.

이런 의정부에서 95년이후 이순호변호사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변호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상한 용어가 하나 있었다. 이른바 '4인방'이었다.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4인방이 뭡니까?' 물어보니 "의정부에서 안되는게 없다는 변호사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형사사건 짹슬이 하니까 불여준 이름입니다."

이들은 이순호 변호사를 선두로하여 모두 법관출신들이었다.

내가 잘 몰랐던 이유는 4인방이 구성(?)될 때에는 미국에 있는 1년 5개월동안 유학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의정부의 풍토가 확 바뀌어 이들의 폭우대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형사법정, 영장신문실 등에 가보면 언제 어느때나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독주가 검찰을 자극시켰다는 설도 있다.

이런 사실을 엿볼수 있는 일화를 소개한다.

97년 7월경 이 4인방의 활약에 관심을 갖던 신문사 기자가 하루는 사무실에 들러서는 "지원장실에서 뼈째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다.

"왜요"

"오늘 4인방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법원이 빌자 뒤집힌 모양입니다."

그날 기사 내용은 '형사사건의 80%를 4인방이 독식하고 법원에서 영장의 기각률이 다른 변호사들보다 훨씬 높다.'는 정도였다. 법원에서는 이 기사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의도로 뼈째를 했던 것. 그 시기는 법원이나 검찰 모두 전국적으로 마주 미묘한 시기였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서로 감정이 상해있던 때였기 때문이다. 당시 지원장은 대법원에 근무하면서 그 제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다.

여기서 잠깐 영장실질심사제도로 둘러싼 논쟁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 제도는 구속영장을 법관이 발부하기전에 직접 피의자를 불러 범죄사실 등을 확인해본뒤에 영장의 발부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97. 1. 1경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때만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획기적으로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모든 범죄자를 유죄가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전에는 경찰의 수사보고를 토대로 검찰이 주동적으로 구속영장 신청하면 법원은 수사기록만을 심사한 뒤 구속을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구속영장발부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새제도로 말미암아 영장기각율이 높을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니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속을 둘러싼 원인이 일부 줄어드는 피해의식도 있고 실제 피의자를 경찰서로부터 법원까지데리고 오면서 인력낭비가 심해 수사기능이 일부 마비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래서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의 실패한 제도' '판사가 수사에 간섭하여 통제하는 세계에 유래없는 한국적 사법제도라는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이과정에서 두 기관사이에 감정 차원의 대립이 이루어져 전국각지의 비판

과 법원과 검찰이 매우 민감한 긴장관계에 놓이게되었고 그 와중에 이순호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순호사건이 이런 긴장관계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론도 있지만 적어도 이사건 수사만큼은 이 긴장관계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기사를 쓴 기자는 훗날 법원에 찾아갔다. “기사의 자료를 어디서 구했느냐.” “기사내용은 한 마디로 소설이다. 알아보았더니 4인방이 사건은 많지만 영장기각률이 남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이 기사는 일종의 특종이었던 셈인데 활동했던 자료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가 자료를 어디에서 얻었는지는 사안의 예민함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다. 어째든 이 기사로 인한 혜프닝을 통해 ‘4인방’이 의정부 변호사계를 주름잡으며 활약하고 있다는 점과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의 사건선임 과정을 이전부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전성시대에 대한 일화 한 토막을 더 소개한다.

이순호 사건이 터지기 3개월전쯤의 일이다. 이 기사를 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전화를 하여 그가 겪은 일을 들려 주었다. 다음은 그 사연이다.

“95년 6월경 교회신도 한 사람이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경찰관이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면서 H변호사를 소개해 주어 보석을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다.” 마음이 조급해진 가족들은 이런 사정을 듣고 목사님께 찾아왔다. 그때 나는 미국에 가 있었으므로 목사님은 다른 변호사에게 가서 자문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잘알고 지내던 J변호사를 찾아 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이 일을 해결하려면 의정부에서는 오직 한 사람뿐인데. 얼마전에 웃벗고 나온 XXX 변호사한테 한 번 가 보십시오”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천만원이나 요구했고 또 보석이 되면 성공보수를 따로 달라고 했다고 한다. 선임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된 목사님은 “다른 곳에서는 300만원인데 왜 여기는 1000만원씩 받습니까?” 했더니 사무장이 대답하기를 “솔직히 말해서 전관예우 받을 때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무실도 다 빚내어서 한것인데 그래야 이런 빚도 갚지요”했다고 한다. 마음이 급한 가족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사건은 변호사를 소개해준 J변호사의 기대대로 잘 풀렸다.

H변호사가 이미 쓴 보석신청서에다 변호사 이름만 바꿔서 다시 신청한 형국인데 보석이 된 것이다. 경찰관이 소개해 ‘유능한 변호사’ H보다 J변호사가 소개해준 ‘더 유능한 변호사’가 정말 용하기는 용했다. 그런데 J변호사의 케이스가 남의 얘기가 아니었다. 나도 그후 친한 친구에게 용하다고 하는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사정인즉 친구는 구속부터 보석신청까지 이미 2~3명의 변호사를 거쳐서 왔다.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보석받을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구속된 친구 아래의 이런 질문엔 대답해 주기가 참 곤혹스러웠다. 그렇다고 말아 달라고 해도 내가 말을 사건은 아니었다. 친구이기에 여러모로 걸리는게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을 우리기준으로 보면 “밀쳐야 본전도 안되는 사건”으로 분류한다. 즉 일이 잘되면 ‘당연히 될것이 된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안되면 ‘변호사가 무능해서 그렇다.’는 평가를 받기 쉽상이니, 사건을 맡기보다는 오히려 조언해 주는게 본전이상은 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다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면 일언지하에 거절하겠지만 가까운 친구인지라 외면 할 수가 없어서 J변호사처럼 나도 확실(?)하게 보석시켜 줄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귀뜸해주게 되었다. 내 예측이 맞았다. 친구는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석도 확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그 변호사는 수임료를 3000만원 가까이 받았다고 한다. 그 변호사 역시 의정부 변호사들이 지칭하는 4인방중에 한사람이었다. 그들은 ‘어떤 사건이든지 해결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건이 많으면 제일이다’는 사건 제일주의 속에서 이순호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승승장구해 왔다. 변호사가 상담한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만들지 않고 용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어색한 미덕과 양보가 있던곳이 바로 의정부지역이었다.

9. 왜 하필 의정부에서

의정부만 문제투성이의 지역은 아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또다른 이변호사가 꽂 깔려있다. 이쯤되면 ‘왜 하필 의정부에서만 문제가 되었을까’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일단 전국적으로 형사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중 의정부가 더 심했다는 점은 도리없이 인정해야 할 듯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순호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문제가 많았지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고치려고 힘썼던 곳이 의정부였기 때문에 이순호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말이다.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검찰은 매년 변호사들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았고 그것이 농축되어 이순호사건으로 터졌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의정부는 부패의 메카였지만 개혁의 메카이다’고 말하곤 한다.

이제 의정부가 어떻게 개혁의 메카가 되려고 힘썼는지를 되짚어볼 때가 되었다.

10. 경찰서장에서 편지

○○경찰서장 귀하

불철주야 민생치안 확립에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변호사 모임은 이번에 실추된 법조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변호사 사무장들이 경찰서에 출입하지 않기로 자체 결의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충정어린 자정노력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1.

서울지방변호사회 의정부변호사모임

회장, 변호사 변○○ 을립

당시 내가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가평, 연천, 포천, 강원도 철원 경찰서등 의정부법원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 보낸 편지의 요지다. 꼭 받아보시라고 '동기우편'으로 보냈다. 사무장들이 경찰서에 가서 살면서 사건 유치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한 일이다. 얼마나 심했으면 내가 그런마음까지 먹었을까! 그중에서 사건이 제일 많고, 사무장들이 가장 많이 가 있고 그래서 사건 알선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의정부, 고양, 남양주 경찰서는 직접 찾아다녔다. 혼자서는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의정부지역 변호사회 회장인 변모씨와 함께 찾아다녔다. 이때 이 편지를 받아본 경찰서장들의 느낌은 어땠을까, 사실 편지내용은 지극히 부드럽기 그지 없지만 "경찰이 제일 문제가 많으니까 부하들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의 협박이나 경고를 겸한 편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아마 이 편지를 받고 기분좋아한 서장들은 한사람도 없었으리라. 거기다 한술 더 떠 방문까지 한다고 하니 '되게 귀찮게 하네'라는 인상을 받는것도 무리가 아니었을듯 싶다. 이런 분위기를 헤아리면서도 우리는 강건행군을 했다.

"편지 받으셨습니까."

"네"

"경찰서장님, 바쁘시더라도 부하직원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상황은 참 묘했다. 같이 간 회장은 관내 경찰서마다 나에게 끌리다시피해서 가서는 그런 인사를 주고 받았다. 그분도 참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된 경찰서 경찰관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사사건을 알선받는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95. 11.경 50중반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그전까지 줄곧 의정부에서 사건수임 1위를 달리던 분이었다.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는 경찰과 가장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수뇌부를 당황케 만드는 편지를 보내지 않나, 그것도 모자라 항의내지 경고성 방문까지 앞장서야 한다고 하니 무척 당황하고 어정쩡한 처지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회장님은 이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이었다. 이변호사가 사건을 알선하는 노하우는 따지고 보면 회장님이 원조였던 것이다. 이렇게 난처한 입장에 있던 회장님 형식적으로는 진지한 태도로 경찰서장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해 주셨다. 나의 은근한 속셈은 그런 회장님에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서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변호사와 경찰을 함께 고쳐 보자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2~3개월 정도는 사무장들이 경찰서 출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입하지 않는다고 사건을 소개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형사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서 평생 해외여행도 못가셨던 회장님은 몸소 경찰서에 가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장님은 여전히 사건수임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변한게 아무것도 없었다. 최근 이순호 변호사 사건이 터지자 변호사회 모임에서는 경찰서에 지난번과 같은 편지를 쓰기로 합의했다. 변호사회에서 나에게 부탁해 왔으나 보내지 말자고 말했다. 편지를 보내 봤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을 미리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이전의 일 덕분에 나는 경찰서에 편지 쓰는 전문가로 정평이 났던 것이다.

11. 진정서

경찰서에 편지를 보내고 경찰서장을 만나 상황을 개선하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손아무개는 무척 귀찮은 존재'임을 관내경찰서에 상기시켜주는 부작용(?)만 낳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러설수는 없는 일, 다시한

번 오기를 가다듬는다. 그리고 92년 12월 짧은 변호사 몇 명을 만났다.

“우리 매번 회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무장을 경찰서에 출입시키지 말자.”

경찰관한테 사건소개 받지 말자고 결의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임때마다 결의해봐야 그때만 잠시입니다. 최근 사무장 고용해서 사건 찍쓸이하는 브로커 변호사들한테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의정부변호사 모임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밥만 먹는 모임이고, 판사, 검사 접대만하는 모임으로 전락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쯤해서 특별한 조치를 생각해보고 강도있게 의사표시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월 한달에 한 번씩 변호사 모임이 있는데 각자 회비내서 밥먹고 끝내는 것이 전부였다.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변호사들이 될까를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과 사건을 채가서 일등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분위기였다. 밥 먹을때는 서로 술 권하면 웃음을 주고 받지만 사무실로 돌아가면 서로 적이 되는 형국이었다. 유독 나혼자 매일 떠들어봐야 소리에 경워기 아닌가 하는 회의만 들었다.

나는 사실 절실히 이해관계가 없었다. 브로커들이나 경찰이 기승을 부려도 내 사건이 기복없이 꾸준했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엇하러 남들에게 싫은 소리해서 욕만 먹어야 하는지?’ 자문도 해보았다. 남들이 하는 식으로 ‘웬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나의 성격탓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어차피 나는 경찰관이나 브로커나 잘나가는 변호사들한테는 귀찮은 존재로 낙인찍힌지 오래다.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서 너, 참 생각 잘 바꿨다고 칭찬할 사람도 전혀 없다. 오리려 물정모르고 날 뛰더니 이제 철이 들었는가 보다며 조롱받을게 분명하다. 그러나 너도 사건을 더 선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대놓고 할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순진하게 열정하나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모두 믿고 있는 것은 분명치 않는가.” 답이 따로 없었다. 과가 어찌 되었든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동료변호사들을 부추겼던 것이다. 때 생각해낸 ‘특별한 조치’는 수사기관인 검찰로 하여금 사건알선구조에 관심을 갖게 하자는 데로 모아졌다.

검찰에 수사를 구하는 방식은 대략 4가지이다.

고소,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수사를 요구하는 것.

고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를 처벌해달라는 것

진정, 법률상 정해진 수사촉구 방식은 아니지만 고소, 고발보다는 약한수준으로 수사를 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검찰이 진정이나 기타 제보 및 정보활동을 통해 직접 범죄행위를 찾아내는 인지가 있다. 우리는 브로커 변호사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탓에 진정의 형식을 취했다. 그 진정서의 1차 목표는 P변호사였다. 그가 달라지면 다른 변호사들도 다 달라지게 될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업후 10년이상 출곧 1등!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사건을 주고, 소개비도 주고 받고 했다. 진정서는 사실그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였다. 내가 직접 진정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동의하는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다. 목요상, 김봉겸 등 두 중견 변호사와 나를 비롯한 짧은 소장 변호사 5명, 1차적으로 7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피진정인으로 경찰서등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아 찍쓸이하는 브로커 변호사들을 수사해 달라고 했다.

이런 문제있는 변호사들의 사무실 형태를 들여다 보기로 하자.

엄연히 자기돈 내고도 사건 의뢰인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사건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 변호사기에 바쁜 관계로 자주 만나 주지도 않았고 당사자들은 할 이야기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도 문턱이 높아서 사무장 만 만나도 다행이다. 돈을 갖다주고도 영감님 뵙기가 어려워서 애태워야 한다. 이런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사건이 많은데 언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아픔을 해아려 주겠으며 그저 건성으로 동정하는 정도일 것이다. 이런 극소수 변호사들 때문에 화가났고, 우리의 진정요지도 이러한 뜻을 담았다. ‘일부 변호사들이 경찰관과 유착하여 사건을 알선 받고 20~30%의 소개비를 주고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의뢰인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200만원 받을 사건을 400만원 받고 경찰관에게 소개료를 주는거다. 우리들은 이런점을 매우 당연시 여긴다. 그래서 전체 변호사의 신뢰를 맹들게 하고 있다. 나아가서 법원, 검찰등 법조의 신뢰 또한 실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변호사들을 처벌해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각는 마음으로 진정서를 올렸다. 그런데 신문에 기사 몇번나고 유야무야 끝나 버렸다. 담당검사가 몇번 만나자고 해서 갔었는데 적극적으로 수사할 생각은 않고 자료가 없어 수사를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자료를 달라고 했다.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던 것이다. ‘왜 팬한짓해서 귀찮게 하느냐’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 하다. 아래저래 헛고생만 한 풀이다. 얼마나 마음졸이며 독한 마음을 먹고 결의를 다졌던 것인데 한순간 P변호사를 비롯한 브로커변호사들을 긴장시키고 끝났다. 몇 개월지나 검찰에서 ‘취하해 달라’고 해서 체념하듯 취하하지 않았나 싶다.

어찌되었든 그때 내가 얻은 별명이 '진성서 좋아하는 변호사'가 되었고, 결국 나만 오명을 뒤집어 썼다. 내가 목표를 했던 P변호사는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듯 여전히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세상은 내마음 하나 갖고는 안되는구나' 하는 두툼한 벽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12. P와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 더

P변호사와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 더 소개한다.

G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해 조사받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A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선임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이 선임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였다. 그런데 수사경찰관이 관서밖 소방서 사무실로 피의자를 불러낸 것. 그곳에서 P변호사의 사무장을 인사시키고 '선임하는게 좋겠다'는 권유를 뿐리칠 재간이 없어 생각지도 않는 P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당연히 A변호사가 화가나 즉시 '어떤 경위로 경찰이 사무장과 피의자를 만나게 해서 선임하게 되었는지 해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내용의 통고서를 P변호사에 보냈다.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A변호사 사무원이 같은 전몰 바로 밑에 층에 있는 P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했다. 그런데 P변호사는 의외로 당당했다. 그리고 노련하게 답변을 보내기를 "피의자와 수사관이 먼 친척인데 변호사를 누굴 선임하면 좋겠느냐고 먼저 물어봐서 가르쳐 준 것이다."는 요지였다.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P변호사가 선임하는 사건의 피의자들은 유난이 경찰관이나 사무장 친척지간이 많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G경찰서는 P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었다. 그러니 A변호사가 이곳 경찰서 사건을 맡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는 애초 이를수 없는 꿈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사건을 한곳에서 싹쓸이 하는 구조는 그때와 이번호사 때나 변함이 없었다. 이러니 P변호사가 이번호사의 '스승'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리라.

13. 사건수 제한

진정서 사건이 유아무아된 뒤 몇 달이 지나 갔다. 반은 체념한 상태였지만 문득 문득 '이렇게 주저 않아야' 하는 생각이 밀려들곤 했다. 아주 강경하게 진정도 해보고 약하게는 양심에 호소하는 방식도 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 강경하게 꼭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자고 해서 생각해 낸게 선임건수를 규제하는 아이디어였다. 즉 1개월에 형사사건 선임건수가 20건이 넘지않도록 신사협정을 맺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각 검찰에 고발하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이 부분은 서로 생각이 맞았다. 나로서는 싹쓸이하는 구조를 없애는 목적이 있고 규제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의 선임이 보장되었으니까 말이다. 당시 P변호사를 비롯한 4-5명의 변호사가 매월 20건이상을 했었는데 새로운 신사협정으로 말미암아 자율적으로 사건수를 조절하는 신기한 시대가 의정부에 도래했던 것이다.

이것은 엄밀히 법률적으로 보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사건을 20건 넘게 하면 안된다는 법률근거가 더디 있느냐고 물으면 할말이 없다. 그러나 근거여부를 떠나서 브로커구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20건 이상을 할수 없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지닌 변호사들이 대놓고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수 없었다.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면 선임계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이때 서울지방회로부터 수입인지를 사서 첨부하는 절차를 취한다. 그리고 서울지방회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매월 몇건씩 했는지 알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모아져 년말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어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러므로 매년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서울지방회에 가서 각자 선임한 경유건수를 확인받아 이것을 토대로 세금을 신고하게 된다. 이렇게 경유건수는 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부분이었는데 우리들은 총무인 나만큼은 매월 전체변호사들의 경유건수를 체크하는 권한을 가지게 했다.

"P변호사님 이번에 20건이 또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달에 한 번 더 초과하시면 예정된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

능력많은 P변호사는 이 신사협정을 가끔 어기곤 했다. 그렇다고 나도 즉각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게 내키지 않아 그만두고 했었다.

어찌되었든 이런 현실타협적인 방식을 통해 "의정부에서 자정 노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순광운이 의정부변호사의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는 소문이 서울은 물론 인천, 안동등지까지 났다. 그래서 종종 각지의 뜻있는 변호사들이 자정의 노하우를 물어오곤 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월 20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 지키고서는 선임하는게 불가능한

숫자이다. 그런데도 일부 변호사는 그때 20건도 너무 적다는 불평을 했으니 퉁이 큰 변호사들이 활동했던 곳이 의정부였다. 거기다가 민사사건, 행정, 가사사건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니 P변호의 경우 이런사건들까지 모두 합치면 전성기때 매월 3~40건씩은 했던게 분명하다. 의정부가 물이 좋다는 악명을 했을때 절대 그 명성에 흠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우리의 상상을 넘는 사건을 싹쓸이 해왔다.

14. 다시 30건으로, 의정부 법조의 전환기가 도래

“한달에 20건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30건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아니 그래도 사건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봐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넘치는 사람에게 근거도 없이 사건 적게 하라고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94년 가을경 10년만에 처음으로 법관출신의 변호사가 개업하게 되었는데 브로커나 경찰관을 이용않해도 밀려 들어오는 사건을 주체할길 없으니 20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30건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안건이 다뤄져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때가 의정부 변호사 업계의 전환기였다. 검찰, 법원에서 쉽게 변호사로 개업하기를 꺼렸던 것은 검찰출신의 P변호사가 그동안 독식하다시피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P변호사의 형사사건 싹쓸이 구조를 ‘파이프 라인’라고 불렀다. 해저탐사선으로부터 석유 등을 정제하는 공장으로 연결시켜주는 파이프 라인처럼 경찰서에서 그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을 보내는 파이프 라인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협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데 P변호사의 파이프 라인에 과감하게 도전했던 한 법관출신 변호사로 인해 의정부변호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바뀐 정도가 아니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변호사업계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 변호사는 예상을 뒤엎고 변호사업계의 떠오르는 태양이 되었고 10년간 1등 신화를 구가하던 검찰출신 P변호사는 지는 해가 되었다.

권세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해서 ‘권불10년’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흐름이 우리들에게도 있어 P변호사의 독주가 10년을 넘지 못하니 ‘변불10년’이라고 할만한 일이었다. 이때쯤 P변호사는 안팎으로부터 집중견제를 받은 듯 하다. 변호사쪽에서는 나와 새로운 세대들로부터, 제도권에서는 유형무형의 견제를 받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러니 도리가 없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안하는것만 낫다고 생각을 해 결국 매월 선임하는 사건의 한도수를 30건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때 나는 이미 95. 2경 미국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터이므로 죽자사자 이 문제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P변호사의 시대는 가고 법관출신의 변호사들이 그후 봇물터지 듯이 개업하여 이른바 ‘4인방’의 시대가 개막되어 이순호사건까지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15. P 변호사의 죽음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온지 9개월이 넘는 95. 11경의 일이다. 잠을 자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이 시간에 무슨 전화일까. 전화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갔다. 보통 이 시간이 자고있는 밤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J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던 동료변호사였다.

“아니 왜 한밤중에 전화야.”

나는 잠결에 좀 통명스레 말했다.

“아 P변호사님이 오늘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문상갈거라고 했다. 나는 J에게 되물었다. “정말이니”고

이 깨지에서 받은 소식에 나는 유난히 감회가 남달랐다. 아마 동료인 J도 내가 그의 죽음에 대해 남다른 느낌을 갖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해 준 것이다.

P변호사 죽음은 믿어지지 않았다.

P변호사는 50대 초반으로 활동이 왕성한 시기지 않는가. 그는 여러 변호사와는 달리 사건은 제일 많으면서도 저녁엔 술접대를 거의 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사건이 많아 가방에 사건봉투를 많이 넣고 이법정 저법정 돌아다니는 것 보면 ‘저 양반 참 체력이 대단하시구나.’ 혼자 생각할 정도로 정력적이었다. 그러나 사고도 아닌 병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2년과정의 사법연수원을 다니게 되는데 2년차에는 실무경험을 얻기위해 검찰과 법원의 시보생활을 하게된다. 나는 87년경 의정부에서 검찰 및 판사시보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P변호사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시보들의 우상이 되었다. 우선 사건이 많으니 부러워 보였다. 그리고 사건이 많아도 매사 열심히 하는 성실성에 혀를 내둘렀다. 모든일을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었다. 이점은 두고두고 그에게서 본받을만한 점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다른 변호사들도 모두 그가 열심히 한 것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마음도 넓어 판사들과 고

스톱할 때 하찮은 시보인 나에게까지 실탄을 주어서 나에게도 접대받을 기회를 주신분이기도 하다. 또 맛있는 갈비집을 알게 해준 분이다. 그의 덕택으로 나도 송추에 있는 갈비집의 십년 단골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변호사 개업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인간관계란게 참으로 오묘한 것이다. 은혜를 원수로 삼는 격이 되었다. 나는 의정부 법조에서 P변호사만 자제하면 모든게 깨끗해지리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사건 선임방식을 보면 이순호 변호사의 할아버지격이다.

“P변호사님, 사무장이 경찰서 출입했다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주의해서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P변호사님. 이번달에 형사사건이 20건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대로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P변호사님, 경찰관이 경찰서앞 다니며 사무장을 오게해 구속된 사람의 만남을 주선해서 선임케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확인해보니까 가족과 경찰이 친척이라 합니다.”

매사가 P변호사와는 이런관계였다. 우리가 변호사회를 하면 모임은 꼭 이런 문답으로 끝맺었다.

P변호사도 그때 그때 그것도 공개된 자리에서 수십명의 변호사들 앞에서 경력도 짧은 내가 선배변호사에게 이런 문제를 들이댔을 때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그런데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예의 바르게 나의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사적으로 나에게와서 손변호사 그럴수 있나고 항의하지도 않았다. 가끔 내 얘기를 오히려 좋게 해주고 다녔다. “손변호사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 주는 변호사도 있어야 한다.”고 주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한때 우리는 의정부 변호사회에서 그분은 회장 나는 총무를 맡아 모임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 일도 했다. ‘적과의 동침’은 바로 이를 두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이 책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 경찰서마다 그의 이름으로 사건일선을 자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경찰서장들도 나와 동행하며 만나러 다녔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그를 견제하기 위해 행해졌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순응했는데 이런 그의 태도로 미루어 그는 아마도 내위에서 인생을 통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다. 또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잘못을 비판하는 아들을 보고 ‘그래 내가 다 안다’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듯이 나를 알고도 내가 하자는대로 다 따라하신 것은 아닌지도 모를일이다. 아니면 노련한 처세술이었는지. 짧은 변호사들이 최후로 검찰에 경찰관 통해서 사건 선임하던 변호사들 처벌해 달라고한 진정건도 그렇다. 그때도 나는 P변호사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P변호사만 잘하면 전체가 달라질거라고 믿고 그렇게 끈질기게 했던 내가 잘한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후 법관출신 변호사가 의정부에서 처음으로 개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P변호사는 그때까지 고수했던 자리를 그 법관출신 변호사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다. 그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전히 사건은 많으면서도 1 등을 빼앗긴 상실감 속에 마음고생도 심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급변하는 상황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리라. 그런 스트레스가 그를 병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그리고 나도 일정부분 압박을 한것 같다. 오랜시간동안 그 옆에서 그를 신경쓰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때 나의 마음은 무척 무거웠고, 내가 꼭 그 변호사님께 그토록 끈질기게 그려야만 했을까 하는 후회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스로 벼텨낼수 없을 만큼 중압감을 주었던 것은 그토록 침착하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원래 사건 많은 사무실에 바람잘 날이 없는 법이다. 잘되는 사건도 많지만 당사자한테 갖은 수모나 행패를 당할 기회가 많은 곳도 사건많은 사무실이다. 돈을 많이 버는만큼 변호사에게 주는 대가가 이처럼 만만치 않다. 내가 알기로는 P변호사는 10여년이상 해외여행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음의 여유도 없었겠지만 사건에 채여서 시간낼 틈도 없었던 탓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같은 입장에서는 ‘사건 많은게 꼭 좋은 것은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니다.’라는 말을 신념을 갖고 확실히 할수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P변호사는 돌아가셨다. 그가 죽은뒤에 의정부에는 그가 모르는 변호사들이 수십명 늘어나 재판장을 드나들고 있다. 요새 법정에서 사건 기다리고 앉아 있다보면 잰걸음으로 이법정 저법정을 바빠 왔다갔다 하시던 P변호사의 모습이 가끔 떠오른다.

16. 사정은 많이 달라지고

96년 6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의정부로 돌아와 보니 의정부변호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오랜만에 와보니 무언가 낯선 것 같고 외토리 같은 심정이 들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오니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그것만은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없는 동안 변호사가 10명정도 늘었고, 새로 개업한 사람들 대부분이 검찰이나 법관출신이었다. 그중 이순호 변호사도 끼어 있었다. 하여튼 법정에서나 모임에서나 그들은 매우 자신 있고, 당당하고, 활기차 보여서 주눅이들 정도였다. 그때 나는 마음이 위축되면서 ‘의정부의 분위기가 바뀌었구나.’생각

했다. 예전에 변호사회 모임이나 활동을 한 주체는 우리 같은 젊은 변호사였는데 쟁쟁한 법관 출신들이 줄줄이 변호사 개업을 해서 변호사 사회의 중심이 되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 나와 같이 하던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뭐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뀌어도 이렇게 빨리 바뀔수 있는건가?”

내가 미국가기 전에 변호사 모임 총무를 맡아 일하면서 일구어 논 여러가지 변호사 자정 노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한달에 형사사건 30건 이상하는 변호사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하는 일도 흐지부지 되었고, 한달에 한 번 모임을 갖던 것도 두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도 무미건조해졌을뿐 예전의 그 열의나 자정 노력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동조하던 변호사들도 역시 분위기에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니가 더욱 외로리 같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했다. 그저 주저 앉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열의를 갖고 다시 정화작업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있었다. ‘좀 기다리자’고 다짐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가능한한 모임에 가면 말을 아꼈다. 아니 남들이 보면 이상할 정도로 발언을 일체 하지 안했다. 주위 변호사들은 ‘미국 잣다오더니 인생관이 바뀌었구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저 가만히 침묵만을 지키기가 힘겨웠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뾰족한 수는 없었다. 새로 형성된 벽이 너무 단단해 보였다. 그래서 ‘ 그냥 나도 다른 변호사들처럼 편하게 지내볼까?’라고도 생각해 봤다. 그런데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게 내 성격이고, 그것이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고 부대끼게 한다.

내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많은 변호사들은 아마 “귀찮게 굴 사람이 또 왔네.”하며 내심 경계심을 잔뜩 가졌을 것이다. 당시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려 해도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것의 정체를 몰라 답답하기만 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시간속에서 반저의 기회, 그들을 귀찮게 굴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순호사건이 터졌던 것이다.

17. 2라운드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호사건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불똥이 떨지는 알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한가지 여전 남는다. ‘2라운드라 할수 있는 법관들의 문제는 어떻게 불거졌을까?’ 하는거다. 즉 의정부지청이나 주임검사가 처음부터 법관을 겨냥하여 사건 개시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검찰은 그들의 수사가 이렇게 크게 확대될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이순호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때까지 이변호사나 관련판사들의 계좌추적을 검찰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 발표때 변호사로는 이변호사 1명만을 체포영장을 발부할수 있었던 사실을 변호사로는 단 1명만은 큰 위안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관수사는 자칫 검찰과 법원의 갈등관계로 번질수 있는 폭탄같은 성격을 지닌 것인데 함부로 밀쳐야 본전도 안될 사건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게 올바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검찰이나 법원 모두가 따지고 보면 사법시험동기, 연수원동기, 학교선후배 등의 친분관계로 얹히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허물면서까지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추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반론의 밑바닥에는 특히 수사 시점이 영장실질심사제를 두고 대검과 대법원 및 전국의 법원, 검찰이 감정적인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깔고 있다. 그래서 이순호사건이나 판사들 문제도 처음부터 검찰이 의도했다고 믿고 있는 법조인들도 많은게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그때 의정부 지원장이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실무 주역인 탓에 이런 추측이 무성했다. 특히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한 사건들의 영장기각률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고 판단하는 검찰에서는 당연히 ‘손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질수 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이순호 사건의 의미를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 이 논리대로 하면 이 변호사는 억울하게 회생을 당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누가 보아도 옳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수사의 동기가 영장실질심사 문제로 빚어졌다는 논리에도 찬성할수 없다. 영장실질심사의 기본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이 다투었다는 사실 자체도 국민의 눈으로 보면 매우 이상하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런 주장은 지나친 피해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정리해보자. 검찰은 이순호사건을 수사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은 이순호변호사와 그를 둘러싼 남양주 커넥션이었다. 이것이 제대로 종결되었으면 판사들 수사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검찰은 물론 어느 누구도 생각치 않은 들판 사태가 생기면서 상황은 변해갔다. 그리고 한 번 불거진 상황은 누구도 주체할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에 진전을 거듭하여 일개 변호사 사건이 법조전체를 흔들어 놓는 태풍으로 변해 버렸다고 보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18. 법원의 보석결정이 불을 지르다.

'검찰은 물론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않던 돌발상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97년 11. 19.경 이뤄진 구속된 사무장에 대한 법원의 보석결정이 아닐까 한다. 사실 그 당시 사건의 정황으로는 어느 모로 보아도 보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93년 인천에서는 구속된 사무장이 1년의 실형선고를 받을 정도였다. 특히 93년도의 변호사 구속사건과 비교하여 이순호 사건은 수사의 깊이나 폭에서 차이가 너무난다. 인천에서는 해당 변호사나 사무장만 구속되었을뿐이다. 그러나 이순호 사건에서는 관련 경찰관, 법원직원, 검찰직원등이 구속되는 대형 사건이었다. 런 비중있는 사건으로 구속된 당사자들이 보석결정을 받고 구속된지 20여일만에 전격석방이 되었으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느끼는 감정은 남다를게 분명하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었던 일반인들 조차도 이번 보석결정이 너무 파격적이니 '한번 전쟁이 불겠구나'하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이순호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국민의 눈이 끌지 않을때였는데도 과감하게도 '법과 양심(?)'에 따라 보석을 결정했던 것이다. 석이 인정된 사무장의 경우 그는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를 고용했던 이변호사 역시 모든 책임을 이 사무장에게 떠 넘기는 형식이었다. 그러니 명백히 자백하는 사건도 아니었던 셈이었다. 백도 하지 않은 사건을 보석 결정하는 것 자체가 실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상상도 할수 없다. 보석을 허가하는 기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어야 한다. 일부 죄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 나아가 공교롭게도 법원출신의 사무장과 법무사는 석방이되고 검찰출신의 계장과 법무사들은 보석이 불허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훌러나온 얘기는 이렇다.

"법원, 검찰 출신으로 구분하여 결정한 일이 없다. 사안을 기준으로 했다. 보석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는 비교적 가벼웠던 탓에 이런 결정이 난거다. 의도적으로 편을 가르는 식의 결정은 추호도 생각 않았다."

이런 논리에 대해 검찰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반박한다.
"최 아무개 사무장은 이순호 변호사 다음으로 주범격이다. 이런 주범을 사안이 가볍다고 할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은 모두 거기서 거기다. 별로 차이가 없다. 백번양보 하더라도 주범격인 최사무장을 석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19. 마침내 뇌관은 터지고

보석결정이 난 직후의 일이다. 라디오 방송국의 L모기자가 찾아와 의미있는 말을 했다.

"내가 이것을 터뜨리면 모두 다칩니다."

그때 느낌으로는 바로 판사들과 관련된 자료를 그가 갖고 있는 듯 했다. 다만 그것이 이 변호사 사무장이 기재했던 장부였는지 수사검사가 확보했던 자료중의 일부였는지는 알길이 없다. 그러나 이순호 사건의 뇌관이라 할수 있는 문제가 폭발직전까지 와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다. 마침내 J일보 사회면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건드렸다. 실명표기는 안되었지만 여러명의 판사가 이 변호사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아 이제 뇌관이 폭발하는구나'하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기사였다.

근거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면 쓸수 없는게 신문의 생리가 아닌가. 특히 기사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데스크의 입장에서는 또한번 걸려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텐데 자신이 있고 작업이 제대로 되었으니까 이 기사가 나왔지 않았겠는가.

"그 기사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내가 기자에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이랬다.

"검찰의 고위간부가 A4 용지를 흔들면서 여기에 다 있지 하더라구요" 추측건데 그는 대놓고 그 대검 간부로부터 자료를 얻었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로부터 기사의 진실성을 검증해 줄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았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그 간부가 여기있지 하면서 멀리서 보여 주었다는 자료는 무엇이었을까? 이때는 수사 검사가 비록 이 변호사의 10개 시중은행 통장을 압수한 상태이긴 했지만 계좌추적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판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아마 그가 보여 주었다는 자료는 이 변호사의 장부내용증 일부가 아니었을까. 그 장부에 친분관계 등으로 사건을 소개해 준 판사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보태어지지 않았을까.

최사무장에 대한 보석 결정 이를 뒤 결국 수사검사는 조홍은행 의정부지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노 검사가 데리고 있는 계장과, 의정부세무서 직원의 도움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시 해당 판사들의 계좌추적은 아니었지만 이변호사 갖고 있는 여러 은행계좌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판사들의 계좌가 역추적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시 은행등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수색 영장에 기재된 계좌추적 내용이 상당히 포함적이었다고 한다. 입출금 시기도 이순호 사건전후로 광범위하게 잡았다. 사실상 이 변호사의 입출금과 관련된 모든 계좌를 폭넓게 조사한 것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작업은 매일 이뤄진 것은 아닌듯하다. 아주 뜸하게 은행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토대로 하면 그렇다. 이때 비로소 해당 판사들의 입출금 실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1. 26. D일보는 그전의 기사와 달리 구체적인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다.

'K, L, J등 판사들이 이 변호사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였다.

마침내 이순호 사건의 뇌관이 터져 사법부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후 기사를 쓴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서 "실제 당사자들한테 확인해 보았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제가 어젯밤 늦게 J판사 집을 찾았습니다. 돈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아니다라고해서 우리자료가 있다. 사실대로 얘기해 보라고 다그쳤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우리가 쓸 기사내용을 사실상 확인해 주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은은가.

이들 기자들은 밤새 해당 판사들을 찾아가 눈치를 보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명백하게 시인도 부인도 않는 판사들의 태도에 확증을 갖고 기사를 내보냈던 것이라. 이기사는 종전의 기사들과 다른 점은 근거자료일 듯 하다. 보석결정 뒤 벌어진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기사를 만들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료를 기자들은 어떻게 얻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중에 흐르는 몇가지 설을 소개한다.

일설은 공명심이 강한 수사검사가 훌렸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수사검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자료 등을 대검 수준에서 훌렸다는 설이 그것이다.

하나 더 있다. 수사기록 접근이 비교적 쉬운 하급직원들한테서 입수했다는 설이다. 어느것도 확인할 길은 없다. 우선 검찰이 법원조직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상명하단의 계급구조가 유난히 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대 수사검사가 공명심에 들떠 상관의 결재없이 함부로 훌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면 자료를 훌릴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고위층이나 의정부지청의 하급직원으로 압축할수 있는데 나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압수한 기자가 의정부관내에 연고를 두고 있으면서 직원들과의 접촉이 매우 쉬웠다는 얘기를 최근에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연유로 직원등이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었는지도 나역시도 알길은 없다. 어찌되었든 이 생각도 막연한 추측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의정부 법원과 지청의 관계는 돌이킬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불꽃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까. 그리고 그 절정기는 97. 12. 22의 무죄판결이었다. 주범격인 이 변호사의 최종업, 최옹주 사무장 등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처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것이었다. 역시 보석결정을 내렸던 J판사가 내린 판결이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첫 재판뒤에 결심으로가 곧바로 판결선고가 있었으니 초고속으로 무죄선고가 있었던 셈이다.

통상의 경우라면 어땠을까.

"검사님, 공소사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속행 하겠습니다."

판사가 대충 이런식으로 공소장의 내용이나 법령내용 등을 검토하는 기회를 주는게 관례아닌 관례였다. 이런 관례조차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된 점도 특별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선량한 영세민들을 속여 고액의 선임료 등을 받고 알선료로 20-30%를 공무원에게 주었던 사무장들의 행위가 죄가 안된다는거였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논리대로라면 판결의 취지도 이해 못할 것도 아니지만 수개월간 법조전체를 뒤흔들었던 사건에서 주범들이 집행유예도 아닌 무죄로 풀려났으니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법조비리를 파헤치는 작업시 벽에 부딪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또한 이 판결로 이순호 변호사 리스트의 존재 여부로 곤욕을 치른 법원이 부담을 덜기 위해 비난을 무릅쓰고 판결을 내렸다는 오해도 받아야 했다. 그 뒤 이 판결을 내린 J판사는 금품수수 명단에 올라 징계를 받고 사표를 내었다. 예측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 판결선고때까지 그는 본인을 포함하여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는 사태를 '판사는 판결로 얘기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그의 보석결정이나 판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도 자유롭지 못했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20. 재판부 배당에 대한 아쉬움

의정부 사건이 정리된 지금, 일부에서는 당시 이순호변호사의 사무장 등을 보석해 주고 무죄선고까지한 판사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곤 한다. 그 아쉬움은 이런 것이다.

담당 판사는 이 변호사와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그리고 의정부 지원으로 부임하기전에 부산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두사람이 상당히 친밀한 사이일텐데 사건배당하는데 왜 이점을 눈여겨 보지 않았을까 하는 대목이다. 사안이 뭔지 예민한 사안인만큼 재판부 배당을 신중하게 했더라면 비록 보석결과와 무죄선고는 똑같게 나왔더라도 서로 짜고 재판했다는 오해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배당을 하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본다.

지원장 직권으로 형사재판부를 아예 바꾸던지,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은 의정부지원의 행정을 총괄했던 지원장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겼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지원장은 이변호사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 나름대로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했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그래서 과거의 지원장들 경우처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것은 따로 당상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의 입장에서보면 둘발사태라 할수 있는 이순호사건 때문에 도중하차하고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 아마 판사가 소신대로 판결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일일한 생각이 기민하게 대처할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21. 럭비공은 검사한테

어디로 뛸지 모르는 럭비공은 마침내 검사들에게 간다.

98. 2. 20.경 대법원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판사 9명을 중징계하고 의정부지원 판사 38명을 모두 교체하겠다고 결정한다. 그리고 4일뒤에 500여명의 시민들이 의정부지청에 조사 6명을 수뢰혐으로 고발하면서 정식으로 검찰수사가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의정부나 서울동지의 일부 법조인들로부터 '판사만 잘못한게 아니다. 검사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며 물 밑에서 갖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고 칼자루를 검찰에 맡겨버린 이들로서는 전전긍긍 할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비난할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변호사 부인의 폭로로 비리 의혹이 검사들에게 번지게 되었다. 즉 석간인 M일보에서 2. 26. 이순호변호사한테 "의정부 검사들도 돈받았다."는 기사가 사회면 텁을 장식하면서 검사들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진실여부를 떠나서 이순호사건의 수사본거지인 의정부지청 검사들이 들먹거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실이라면 '이변호사를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사실을 폭로한 장본인이 이 변호사의 부인이었다는 점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수십여명의 기자들이 우리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도 맨 마지막에는 거의 "이변호사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인을 만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곤했다.

이 물음에 대답할 입장이 못되는 나는 '노코멘트'으로 일관할수 밖에 없었는데 뒤에 들리는 얘기로는 아무도 이변호사의 처나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M일보의 기자가 이변호사 부인을 만나서 그것도 가장 민감한 사안을 발설했다고 하니 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보도직후 '실제 검사가 돈을 받았느냐'는 진실성 문제는 물론 어떻게 기자가 부인을 불러내 얘기를 끌어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순호 사건 수사에 불만을 갖고 있을수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협조속에 이뤄졌다는 소문이 돌다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정리되기를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법원세서 진상파악을 위해 파견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만남이 가능했다는데 무게가 실어졌다.

어찌되었던 이 기사로 말미암아 국민들한테 본격적으로 "법조가 모두 한통속으로 썩었다"는 비난을 둔뻑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검찰은 더 이상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제기된 '판사수사'를 미룰수 없게 되어 수사에 유보적이던 종전의 태도를 바꿀수 밖에 없게 되어 이를 뒤인 2. 27. 서울지검 특수 3부가 고발된 의정부지원 판사들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하루뒤인 2. 28. 검찰총장은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도 수사하겠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순호사건의 제 2라운드가 개시되었다. 예정도 없던 2라운드는 위와 같이 갖가지 에피소드와 헤프닝이 겹치고 겹치면서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세상일이란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22. 어떻게 조사를 받았을까.

검찰의 법관수사가 한창일때다.

쫓기듯이 의정부를 떠나 수도권 지역에 발령이 난 ○○○ 판사가 전화를 했다. 더러 남다른 신뢰를 가지고 지냈지만 여간 부담스런 전화가 아닐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먼저 "어떻게 지내나"고 물었다.

"대법원에서 사표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XXX 판사도 조사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드디어 '옳것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두 판사가 조사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상당히 의외였다. 내가 알기에 두사람은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촌지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어안이 병벙했다. 생각보다 수사가 세게 진행되는 것을 느꼈다. 처음 이 문제를 터지고 사실 걱정은 됐었다.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에 누가 자유로울수 있겠는가!'

남의 잘못을 단죄하거나 잘잘못을 가리는 법관의 입장에서 피의자의 입장이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그들이 겪은 마음고생이 안스럽기 그지 없었다.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얼마 받았습니까. 사실대로 얘기 하십시오."

검찰 조사관의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그는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실제로 당시 법관들은 3~4시간씩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순호 변호사의 경우 5일을 밤낮없이 조사받았고, 심지어 이변호사 부모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된 검사들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오히려 어떤 검사들은 조사받고 나서 하도 심하게 당하니까 술먹고 울기까지 했다고 한다. 검사도 그러니 판사들이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판사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변호사는 14명이 조사를 받았다. 의정부에서 10명, 서울에서 4명이 검찰에 불려갔다.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등 주말을 빼해서 검찰에 갔다고 한다. 적으면 4시간 길면 13시간이상 조사를 받은 변호사도 있었다. 나중에는 누가 검찰에 갔는지 확인이 되었지만 처음 며칠간은 모두 섞여하는 상태였다.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어느 변호사도 가기전에 상의나 고민이라도 같이 나눌수 있으면만 조사받은 사실을 우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아니 왜 진작 얘기 않하였습니까?"

그래도 상의를 하고 갔으면 좋았을텐데요"

"뭐 의논해도 그렇고 해서" 제대로 말을 잊지 못한다. 그가 겪은 고통이 가슴에 전달되었다. 그에게는 조금 억울한 점이 있다.

일단 그는 형사사건을 써술이 하는 잘나가는 변호사도 아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수단을 부려 외근사무장을 경찰서에 파견시키는 일도 않했던 분이다. 그는 인정에 끌리고 관행에 끌려 명절 때 한두차례 떡값을 갖다주었는데 그것이 노출이 되었던 것이다. 그와 비교해보면 나는 지질이도 정이 없는 사람이다. 어쩌면 가끔은 나눠가질수 있는 정이 내게는 없는 덕택에 검찰에 불려가는 기회를 얻지못한게 그와 나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해야 할듯하다. 모질게 조사를 받은 또다른 변호사가 들려주는 얘기도 남다르지 않다. 그가 검찰에 갔다온 뒤 우연히 집근처 벽화점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후배 검사를 만났다. 이 검사가 먼저 변호사를 알아보고 인사하면서 "그때는 무척 미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란다. "만난 사실도 쑥쓰럽고, 미안합니다라는 인사를 받는것도 무척 쑥쓰러웠습니다." 그때의 당황했던 만남을 담담하게 전하는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수사기관에서 겪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느지를 짐작케 한다. 이를 두변호사는 다행이 사안이 경미한 탓에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평생 잊을수 없는 경험을 하는 난리를 겪었다. 인정과 관행에 충실한 죄로 말이다.

23. 변호사개업 할 수 있을까?

최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표를 내게 된 연수원 동기가 전화를 했다.

그는 나와 연수원 시절 시보생활을 같이하여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다. 그가 의정부에서 영장담당 판사가 되었을때다. 나는 혜택 좀 많이 받을수 있겠구나 은근히 기대했는데 한 번도 친구라는 이유로 혜택을 준 일이 없었으니 서운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객관적으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던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 오히려 영장을 발부했을때는 한편으로 섭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대로 재판을 하는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반갑기도 했다.

그가 의정부로 오기전에는 시.군 법원 판사로 있었다. 어느날 1년만에 이뤄진 동기 모임이 있어서 만났더니 그가 웃으면서 "야, 나 판공비 많이 드니까 네가 도와줘라."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시.군 법원 판사로 부임되면 기관장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공식행사에 자주 참석하게 된다고 한다. 시장이나 경찰서장 옆에 앉고, 거느리는 직원도 6~7명 되니 점심이나 그이외에 판공비가 많이 듦다고 했다. 그러나 절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실속이 없는 기관장인 셈이다. 거기에다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없어 자질구레한 경비들이 모두 다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시.군 법원 판사는 현직의 대부분의 판사들이 꺼려한다는 것이다. 판사 월급만 가지고 아이들 키우며 살기도 빽빽한데 오히려 직원들 점심 사주고 이것저것 책임지다 보면 적금 부어가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라 한다. 시.군 법원제도는 몇해전에 도입되었다. 전국주요 시나 군에 법원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사법서비스를 받게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주로

소가가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편하게 재판하는데 뜻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실제 판사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제도가 아니다.

예를들어 옛날에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1,000만원 사건 때문에 가평에서 의정부까지 2~3시간 걸려 재판받으러 왔었는데 군내에 법원이 있으니까 새벽 밤 먹고 재판받는 고생을 하지 않게 된 셈이다. 이런 시.군법원에서 판사들은 대개 1년정도 근무하다가 지방법원 소재지로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고생을 하는 친구는 내가 그런 부탁 안들어줄 것을 알고 농담조로 한말이지만 얼마나 힘들면 인정머리라곤 하나도 없는 내게 청탁아닌 청탁까지 했을까 생각해보니 그의 처지가 어떤지 짐작이 잦다. 얼마후 인사 이동이 있을 무렵 예전 같았으면 “야, 잘가”하며 최소한 밥이라도 함께 먹고 헤어졌을텐데 그때 상황으로는 피차 거북해서 전화 한 통화도 못 나누었다. 물론 그는 새발령지에 간 뒤 얼마후 사표를 내게 되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변호사 개업하려고 하는데 변협에서 받아줄까? 네 생각은 어떠니?”

전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의 잘잘못을 떠나서 가슴이 울컥해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생 법관의 길만 생각했다. 1~2년뒤에는 대법원의 지원을 받아 미국유학을 가려고 매일새벽 토플학원에 가서 영어공부를 하던 친구였다. 그런 그가 법관과 유학의 꿈을 접고 호구지책이 될 변호사 개업도 마음대로 못할 형국이 되었으니..... , 그런데 이런 친구에게 내가 해줄수 있는 말이 없다는게 더 나를 답답하게 했다.

24.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물론 비리의 시작은 변호사였고 브로커들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그들의 돈을 받은 판사들에게로 모아졌다. 공정성을 위해 국민들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높이 모시는 판사들이 직분을 망각하고 재판하고 있다는 생각이온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렇다면 재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급진적인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이같은 여론의 움직임에 밀려 결국 대법원은 판사비리 사실을 시인하고 그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렸다.

금품수수 비리사건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중징계를 받거나 사표를 쓴 것은 사법부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대법원은 98. 4. 7자로 징계회부 판사 15명 중 진모, 서모, 판사등 2명에 대해 정직 10월을 임모, 김모, 정모 판사등 3명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리는등 현직 판사 5명을 중징계 했다. 또 징계에 앞서 이미 사표를 제출한 오모, 김모, 최모 판사 등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법원은 윤모 판사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리고 금품수수 액수가 적은 나머지 6명의 판사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정직처분 등을 받은 판사 8명은 이미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당시의 한모 지원장도 관리책임을 느끼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의 징계조치에 앞서 한달간의 수사 끝에 98. 3. 23.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이들 판사 15명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비록 죄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침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아 재판을 받게 하자는 조치이다. 쉽게 표현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취지이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판사 15명이 이순호변호사등 14명의 변호사들로부터 명절떡값, 여름 휴가비등 명목으로 적게는 140만원, 많게는 93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치례의 성격에 불과하고 사법사상 처음 판사들이 수사대상이 된 점이 기소유예의 기초가 된 정상침작 사유였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품의 손상 행위를 저지른 판사들의 경우 법관 사회 내부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중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징계를 받은 판사들은 사직하더라도 변호사법에 ‘개업제한 규정’이 마련되면 앞으로 변호사 개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대법원은 법관 윤리강령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해 재판 절차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검사의 판사실 출입 및 법관 면담을 금지도록 했다.

이번 의정부지원 비리 판사들의 수사는 결국 이렇게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로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과장과 후유증은 당분간 법조계 전체에 쓰린 상처를 남겼다. 이번 사건으로 징계 당한 판사들은 하나같이 불만을 나타냈다. 판행 같이 내려온 ‘실비’ 수수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그들의 첫 불만이다. 판사들은 하나 같이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쓴 것이 자신들만의 일이 아닐뿐 아니라 법조계에 오랜 관행으로 판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판행같이 내려온 실비’가 어떤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들이 판

사들에게 주는 행태는 대개 몇가지로 분류된다.

떡값은 설날, 추석등 명절에 주는 선물비용이다.

휴가비는 주로 여름휴가나 1년에 3~4차례 주어지는 연차 휴가때 주는 돈이다.

실비는 부정기적으로 건네지는 것인데 주로 같은 방에 있는 판사들이 식사를 하거나 기타 판공비를 보조하는 목적에 쓴다. 금액은 대개 수사결과 발표처럼 1회에 적게는 10만원, 많으면 2-30만원 정도이다. 비교적 대가없이 인사치례의 성격을 띠는 것은 분명하지만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단독 판사실나 3명의 판사가 모여있는 형사합의부 재판부에 집중되는 것은 부인할수 없다. 그래서 종종 판사실마다 '부자방'하고 '가난한 방'이 있다는 웃지못할 농담도 전해진다. 변호사들도 그들의 수임 능력에 따라서 주는 범죄도 다행이다. 대학 동기나 연수원 동기만 챙기는 '인정형' 변호사도 있고 형사 사건을 맡은 판사만 구별해서 배려하는 '실속파'도 있다. 이변호사처럼 사건이 많은 변호사는 대부분의 법관에게 실비를 주는 '대범한 스타일'도 많다. 판사는 그렇다치고 검사는 어떤가 하는 질문도 나올법하다. 검찰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상대적으로 검찰이 받는 수준은 약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80%이상은 주로 법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주로 접촉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당연히 법관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정치례가 법조계에서 어제 오늘 생긴 것은 아니다.

수십년간 내려온 전통이라고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판사들은 "우리가 법조계 전체의 대표선수가 된 것 같다."

"힘없는 우리가 그 오랜 관행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절의 언덕을 오르고 있다."

"우리가 희생양이 된다고 해서 이같은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수 있을 것인가?"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더 강경한 입장은 보인 사람들은 "이같은 관행을 만든 사람들이 징계위원회 되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들이 이같은 징계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면 여론에 떠밀리듯 징계 결정을 한 대법원 수뇌부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이미 전국적인 사건으로 비화되고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같은 입장은 더 이상 피력할 수가 없을 뿐이다. 그리고 관행이더라도 변명의 여지없이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내놓고 항변할수도 없는 것이다. 나는 이런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되물어 본다.

비리 판사로 지목되어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실질적으로 윤리의식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일까? 아니라고 본다. 이들중에는 일부는 조사 받지 않은 다른 판사들보다 더 암시적이고 소박한 상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두가지 실태를 들어보자.

우선 수사 결과 가장 많은 돈을 것으로 들어난 혐의 판사A

천만원을 넘어서지 않은 돈이지만 확인된 금액으로는 조사받은 판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많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올초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호출을 받고 급거 귀국했다. 처음에는 초연하던 그도 검찰조사와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불만어린 표정으로 변했다. 지난해에는 일산의 백화점 야기한 교통 혼잡 문제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침을 가한 명판결을 해 몇 달동안 언론의 초점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형사단독이나 영장을 담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그가 가장 많은 돈을 받은 판사로 낙인이 찍혔다. 앞길이 창창한 소장 판사가 비리의 주범이 되어 버렸다. 신문보도에는 항상 그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 그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된일인가 알아 보았더니 사정이 간단했다.

그는 의정부지원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시군 법원에 나가 있었다. 결국 의정부 법원 앞의 변호사가 그에게 직접 찾아가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통장으로 명절 떡값 명목으로 작은 금액을 몇번 넣은 것이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드러난 것이다. 따지고 보면 확실한 금품수수의 증거를 남겨둔 탓이다. 하기야 받은 입장이나 주는 쪽에서 이런 관행이 언제 문제될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사건이란게 이렇게 예기치 않는에서 터지는거다. 그리고 올초 프랑스 유학갈 때 동기 변호사들 몇명이 차비 명목으로 조금씩 보태준 것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가장 심각한 부정을 저지른 천인공로할 비리판사가 되었다.

B판사는 한순간에 '명판사'에서 '비리판사'로 낙인 찍혀 천당과 지옥을 경험한 꼴이 되었다. 또다른 판사B도 마찬가지다. 그도 형사사건을 맡지 않았다. 평소 변호사들과 어울려 남들처럼 절대 받는 것을 거절해왔다. 외톨이로 판사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그는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모든 돈은 적고 전세는 올려 달라고 하니까 부득이 동기 변호사한테 부탁하였던 것이다. 부탁받은 변호사도 평소 절대하지도 않았던 터이므로 당연히 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변호사로부터 전세돈을 빌려간 판사'로 결론내려져 가장 중한 징계를 받았다. 너무 아이니컬한 것이다. 문제는 변호사들과 철저하게 유착하여 지탄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참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 받았던 그였으니 본인이나 우리들이 갖는 느낌은 참담함 그 자체였으리라.

법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주제기자들로부터 '법관다운 법관'이라고 평가를 받기까지 한 그였다.

'판사 B를 존경한다.'는 어느 기자의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얘기해본 적도 없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대략 판사를 10여년 했으면서도 그는 남들과 달리 집한칸 마련하지 못하고 전셋집을 전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올려달라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전세돈 일부를 벌린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었을까. 현실과 타협하여 주는 돈 일부라도 받았으면 집한칸을 마련하는게 어렵지도 않았을텐데 말이다. 결국 이번 비리판사의 징계처분은 실비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받던 명절 떡값에 대한 처벌로 실로 심각한 법조계의 검은 커넥션을 피해가는 모양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사실 그같은 명절 떡값을 가지고 처벌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예외가 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판결과 관련된 변호사와 판사간의 커넥션, 변호사와 검사간의 커넥션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커넥션에 대해서는 밝혀진게 없다. 애궂게 A 판사는 사건처리와 관련없이 선배들이 가르쳐 주던 것처럼 스스럼 없이 떡값 등을 받고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온라인 계좌를 통해 받은게 죄였다.

B판사는 주변머리 없이 돈을 받지도 못하여 쪼들리게 살았던게 죄라면 죄였다.

II. 누가 브로커인가.

형사사건 선임과 관련하여 어떤 변호사를 브로커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검찰 등의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징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적어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의 1차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사건의 수

형사사건이 월평균 10건 이상되면 브로커 변호사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수 있다. 이점은 실무에서 종사하는 변호사들 대부분의 공동된 의견으로 사실로 보면된다. 변협도 이점을 동의하고 있는 듯 하다.

대한변협이 97. 1. 1부터 97. 10. 31까지 형사본안사건을 기준으로 형사사건 수입순위별 현황을 발표했는데 대한변협이 97. 12. 16. 자로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사사건을 월평균 10건이상 수입한 변호사 85명을 대상으로 수임경위 조사에 착수했던 것.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각 지역의 감찰위원들의 활동기준도 월평균 10건이상 되는 변호사를 체크하고 그 경위를 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서 잘 드러난다.

변호사 1인당 연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는 14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97. 1. 1부터 97. 10. 31까지 본안사건을 기준으로 상위자들의 수임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표참조)

대구 소속의 변호사는 월평균 43.6건을 선임하였다.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1년에 선임하는 평균건수를 1개월에 4배이상 초월하여 선임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순호변호사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그는 50일동안 남양주 경찰서에서 33건을 해 평균 3일에 2건씩을 수임하였다. 93년에 구속되었던 인천의 L모변호사는 개업한지 2-3개월만에 2~300여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조사대상에서 민사사건, 영장, 보석신청, 구속적부심등 신청사건 및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해결시키는 사건 등을 모아보면 이들 변호사들의 전체수임건수는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최근 서울을 제외한 전국지역의 감찰위원들 보고를 보면 「상위권 변호사들 순위」가 지난번의 조사시점과 비교하여 전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이들의 선임구조가 얼마나 단단하게 이뤄졌는지 짐작할수 있는 대목이다.

나. 외근사무장

브로커변호사의 첨병은 외근사무장이다.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을 가져오는 이 외근사무장을 고용하고 있는한 브로커구조를 깨는게 요원하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돋고, 보충하는 비서기능을 지난 사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브로커 변호사 사무실에는 사무장이 있는게 아니다. 사건을 물어오는 영업사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이쯤되면 변호사는 「영업소장」의 직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중 주로 전직경찰관 검찰, 법원직원등 법조관련 경험을 지난 사무장들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순호변호사의 경우, 경찰담당의 최사무장은 남양주경찰서 경장출신이다.

법원, 검찰을 담당한 또다른 최사무장은 2년6개월동안 160여권을 수임했다. 이변호사는 경찰영역과 법조영역의 이질

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솜씨를 발휘했다. 이러니 이들 외근사무장들의 월평균보수는 연수원을 갖나온 고용 변호사들 월급보다 수준이 높다고 보면된다. 월급이 1000만원이 되는 사무장도 있다. 거기에는 판공비까지 합치면 더욱 많아진다. 그리고 경찰관 등을 접대하고 영수증만 변호사를 갖다주면 된다. 뛰어난 사무장이 가는곳에 사건이 몰리는 탓에 스카웃 전쟁도 치열하다. 의정부에서도 공공연이 1억원을 받고 갖다주는 사무장도 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다.

인천에서는 과거 「사무장 3인방」이 있었는데 이들이 5~6개월마다 옮기는 사무실이 1등을 차지 했다는 전설도 들린다. 변호사 있는곳에 법률사무소가 있지만 출중한 외근사무장이 있는곳에 사건이 있는 것이다.

다. 「전관」 변호사.

변협이 조사한 전국 10위권의 변호사 면면을 보자. 연수원 출신은 없고 판사출신이 7명, 검사출신이 3명이다. 평균적으로 이들은 개업한지 2~3년밖에 안된다. 변협의 지난해 말 형사사건 상위 10위권 변호사 131명의 명세를 보자. 전직판사가 42명, 검사가 36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개업 1년이 채못된 변호사를 보면 판사출신이 13명, 검사출신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의 이순호변호사는 판사에서 퇴직한 것은 3년전이다.

인천에서 구속되었던 변호사는 판사출신이었으며 같은 문제로 휴업했던 변호사는 전직 검사였다.

주요 법원, 검찰 소재지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는 이들 전관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전관 예우 운운하는 망국적인 부폐현상의 연결고리도 이곳에 있다고 보면 된다. 이들 전관변호사들의 개업광고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낯 모르는 경찰등으로 하여금 「거래를 터보자」고 통지하는 역할을 하는 꼴이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다면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이대목이다. 과연 직전까지 동료였던 전관변호사들을 파감하게 검찰이 손을 댈수 있을지가 의문이 든다. 유난히 가족같은 분위기나 온정주의를 강조하는게 우리 법조의 보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이 점은 뒤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라. 경 찰

변호사비리의 온상이자 출발지는 경찰이다. 브로커변호사 사건의 80%는 경찰관과 연결되었다고 보면 정확하게 이 순호사건에서 남양주 경찰서 경찰관은 8명이 구속되었다. 하지만 「비리가 확인된 경찰도 적지 않으나 너무 많이 구속되면 경찰서 업무가 마비된다」며 선별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형사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현주소를 가르켜 준다. 구속된 남양주서 형사2반 봉반장은 한편에서는 상습도박 사건으로 10여명을 구속시키는 개가를 올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피의자 7명을 이변호사 사무실에 소개하고 570만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의정부지청은 수사개시전 97. 5. 10부터 6. 20까지의 형사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양주 경찰서 사건의 70%를 이변호사가 독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인천의 경우 93년도에 L모변호사는 N경찰서, 또 다른 L변호사는 S경찰서의 사건을 싹쓸이 했다고 한다.

각 경찰서보다 특정변호사의 사건수임이 집중되었던 현상은 앞으로 개시되는 검찰수사에서 주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칠의 알선 체계도 이원적이다. 각 개인별로 소개하고 알선료를 챙기는 「축재형」이 있는가 하면 각반별, 계별로 소개하고 분배하는 「공동형」이 있는 것 같다.

남양주서에서는 보통 교통사고 사건은 각자 알아서 챙기는 축재형이 원칙이었다고 한다.

일면은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자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브로커구조로 전락한 현실을 새삼스레 눈여겨 보아야 할 때이다.

마. 소 개 료

이런 질문을 해본다.

「명성있는 판사나 검사가 퇴직한 뒤 소개료를 주지 않고도 형사사건을 월평균 10여건이상 수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답은 「없다」이다.

이순호 사건의 검찰수사결과 발표를 인용해보자.

내용인즉 「최근 법률신문에도 서울고등법원의 모판사 출신 변호사 2~3명이 브로커 고용없는 정정당당한 변호사 활동을 천명하였다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1주일만에 백기를 내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현실적인벽」이란 다름아닌 알선료이다. 이것없이 그들에게 사건을 갖다줄 경찰관 및 직원들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알선료의 결재방법도 다양하다.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지급하는 경우, 매사건마다 즉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

변호사의 「원죄」로 통칭된다. 총체적으로 존지나 복비문화에 젖어있는 보편적인 문화현상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

III. 폐 해

브로커변호사의 선임구조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너무 심하다. 몇가지를 간추려 정리해본다.

가. 고액의 선임료

변론의 결과가 똑같은 교통사고를 두고도 한쪽은 300만원을 받고 다른 한쪽은 1000만원을 받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부당한 것이다. 이 부당한 일이 변호사회에서는 통용된다. 이유는 알선료 때문이다. 변호사가 얼마 받겠다고 하는 법은 거의없다. 소개해준 브로커들이나 사무장이 미리 정해주고 받는 법이다. 많이 받을수록 이윤이 많은게 이치다. 거기에 당사자의 능력이나 형편을 따질 겨를이 없게 된다. 이런 실무에서는 1983년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은 설 자리가 없다. 이 규칙 29조 규정처럼 브로커변호사가 형사사건의 쟁송금으로 50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 법조비리온상

사건이 적거나 없는 변호사는 검사, 판사를 만날 이유가 없다. 접대나 촌지를 줄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러나 사건이 몰리는 브로커변호사의 경우는 다르다. 「법정밖에서 사건을 해결」 하려는 목적과 당사자들의 「힘을 써달라」는 부탁 때문에 인사할 수 밖에 없다. 사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등 직원 등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게된다. 이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잘못이 저질러 졌던 것이다.

의정부 판사, 검사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실비 등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마다하는 문화나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그 원죄는 변호사일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추된 사법신뢰를 회복하자」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공허하기만 한다. 왜냐하면 이미 법조의 신뢰가 떨어질대로 떨어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 사법신뢰추락

대한민국의 기본적 질서중의 하나인 법치주의가 밀바닥부터 흔들리게 만든다. 「법조인은 모두 한통속」, 「변호사는 돈만 아는 허가받은 사기꾼」으로 치부되는게 어쩔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형태의 법률소비자들 의식은 법조와 판결등의 권위를 날려 버린다. 승복하지 않고 진정과 고소와 청원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었다. 「변호사를 산다」는게 무슨 뜻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식이다. 그러므로 사건이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제대로 안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이 한계 무엇이 있느냐」, 「힘을 쓴 일이 있으시냐」는 항의를 끝없이 들어야 한다.

라. 서비스개념 몰락

브로커변호사사무실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없고」, 「베푸는 것」만이 있다. 사건이 잘된 것은 「영감님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므로 고마워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선임료를 주고도 제대로 주인대접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선임초기에 사무장이나 변호사한테 상세하게 사건의 전망이나 예측, 위험성 등을 충분히 듣고 그 바탕아래 선임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적 정의가 실종된지 오래다. 이미 경찰에서 「선임하라」는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어떻게 「따질」권능이 있을까. 그러므로 「왜 처음에는 며칠만에 꼭 빼준다고 하셨는냐」는 식의 항의나 진정서를 받는 곳도 이런 브로커변호사 사무실이다.

마. 부폐구조의 첫걸음

대한민국은 부폐공화국이다. 총체적으로 부정부폐가 난무한다. 어느곳이나 여기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다. 이번 IMF도 따지고 보면 그 근원이 이런 부폐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가 어떤 곳인가.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곳이다. 즉, 원칙을 어기면 구속하고 실형도 선고, 하는 곳이 법조이다. 원칙위반자를 가려낼 법조가 거꾸로 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확인했다. 「이러니 다른데는 오죽할까」하는게 보통사람들의 정서이다. 법조가 갖는 상징성의 크기만큼, 브로커변호사로 인한 부폐구조 심화는 범죄의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검찰의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한 것이다. 법조를 둘러싼 부폐문화가 청산될 때만이 「원칙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조성될수 있다고 본다.

바. 진실회피의 위험

일부 경찰구조의 브로커화 현상은 실체적 진실을 가릴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앞서 본 사례가 이를 잘 설명한다. 그 때 변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횡단보도 사고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날 뻔했었다. 실무에서 경찰에서의 교통사고조사를 둘러싸고 재조사 신청이나, 진정등이 잇따르는 것도 사고조사의 전문성 결여에서 오는것도 있지만 이 브로커구조 때문에 올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관의 초동수사 권능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통상의 폭력과 흥기나 각목을 든 폭력 행위, 강도와 공갈, 일반 교통사고와 폭소니 사고, 추행과 강간, 진단과 무조사자의 의지에 따라서 범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무게를 저울질할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 때문에 경찰 등의 선임권유는 권유의 강도를 떠나서 당사자들에게는 하나의 명령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실체적 진실이 흐도되거나 왜곡될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

IV. 검찰수사 전망

가. 법적대책의 핵심

토론과제로 주어진 법조브로커근절을 위한 법적대책의 핵심은 대책에 있지 않다. 어떻게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일찍이 93년경 인천과 서울에서 2-3명의 변호사가 구속되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법조전체적인 수준에서 사법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거나 마련되지 않았다. 95년도경 정부주도로 세계화추진 작업의 이환으로 사법개혁이 논의되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를 늘리는 양적개혁에 머물렀다. 양질의 서비스는 제고하는 차원의 질적개혁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나 대책 마련이 없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뒤에 이순호사건이 터진 것이다. 대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전국에 산재한 브로커변호사들에 대해 1차메스를 가한뒤에 그 바탕에서 새판을 짜는게 순서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전망

법무부장관이나 대검 차원에서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과연 일선에서 이뤄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궁금하다. 우선 전례가 없다. 전국수준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한 역사가 없는 것이다. 경험의 없는터에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수사를 한다고 해놓고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이 온정주의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 이를테면 일선에서 연수원 동기 검사가 동기변호사를 과단성있게 수사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난히 학연, 지연, 동기 등을 따지는 곳이 우리 법조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의 수사는 어찌보면 수사검사가 대학의 배경이 없던 뒷에 가능했다는 역설도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게 현실이다. 세번째,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되는것인데 이런 가족주의 경영 때문에 수사의 흐름이 본류를 관통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체적인 수준에서 각각 열매있는 수사가 진행될수 있는 문제와 수사결과에 집착하다보면 정작 핵심은 비켜나고 사안이 비교적 적거나 파급력이 약한 비리부분에 초점이 모아질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번 수사의 핵심은 앞서 강조한것처럼 형사사건 선임과 관련된 브로커변호사인데 손해배상등 민사문제와 관련된 비리 변호사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면 핵심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비리의 차원이지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는 바로 전자이기 때문이다.

다. 정리

① 97. 10경의 이순호사건을 계기로 브로커변호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즉 이순호사건이 1라운드, 법관등 금품수수건이 2라운드라면 이번 검찰의 전면수사조치는 3라운드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단언한다. 단호하고 추상같은 검찰의 조사를 기대해 본다

② 50년 현대법조의 역사를 새롭게 쓸 유일무이한 기회가 온 것이다. 이때를 놓치면 21세기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변호사가 나라를 망친다는 '변호사 망국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